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4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정성문)

가. 제안이유

-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조직 개편 및 2018년 승인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
 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53명 → 665명 (증 12명)
 - 집행기관의 총수 : 641명 → 653명 (증 12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(변동없음)
-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
 - 총 계 : 653명 → 665명 (증 12명)
 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 - 일 반 직 계 : 631명 → 642명 (증 11명)
 - 4급·4~5급 : 4명 (변동없음)

- 5급 : 27명 (변동없음)
- 6급 이하 : 599명 → 610명 (증 11명)
- 전문경력관 : 1명 (변동없음)
- 연구 직 계 : 2명 → 3명 (증 1명)
- 지 도 직 계 : 19명 (변동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2018년 승인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정원 653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65명임. 집행기관의 총수는 641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53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, 일반직 11명(6급 이하), 연구직 1명이 증가하였음.
- 조례안 검토결과 2018년 승인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53명”을 “66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41명”을 “65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65	665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42	642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7	12	2	4	1	8
6급 이하	610	610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3	3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3	3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